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7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 박용갑·정준호·복기왕

추미애 • 박희승 • 서미화

조인철 · 강유정 · 김성회

문진석 • 윤종군 • 한병도

권향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 ·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 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 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 임금'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 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한편,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는 탄핵소추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및 제60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탄핵된 공무원의 보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제6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직무가 정지된 정무직공무원(대통령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2(탄핵된 공무원의 보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
	의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	
守)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단,</u>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직무가 정지된
	정무직공무원(대통령을 포함한
	<u>다)은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u>
	가기밀 및 직무 관련 비밀에 대
	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할 수 없다.